

의안번호	2204283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C36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0조의7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위기기간동안 해당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한 의료기관의 월 의료수익이 감염병위기기간 직전 3년간의 월평균 의료수익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의료수익 감소보전은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위기기간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함(제2항) - 의료수익의 구체적 범위, 의료수익 보전의 방법·절차등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0조의7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 보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감염병위기기간¹⁾동안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한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염병위기기간 직전 한 달

1) 감염병위기기간이란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해제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간의 평균수익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감염병위기기간 이후 3년동안 보전하도록 할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발생한 감염병 관련 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 8,078억원의 예산을 지원
 - 2020년 9,399억원, 2021년 2조 9,010억원, 2022년 4조 4,924억원, 2023년 6,930억원, 2024년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함
 - 보상의 범위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및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임²⁾
- 개정안에 따라 의료수익 손실보상지급 기간을 감염병위기기간 이후 3년간으로 규정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보상범위

구분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범위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설치·운영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 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시설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설치·운영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 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의 공개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기타	방역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환자 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 조치 등	소독 및 필요 조치 비용 음식물, 물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	건의 평가액 등
	시설/장소 소독 등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의료수익의 구체적 범위와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사항

2) 기회비용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요청에 따라 병상을 비웠으나 코로나 19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함

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감염병의 장래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정보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